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하 수 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변경(안 별표1의3)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새롭게 적용(2021.1.1.)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가목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별표 1의4 제7호 중 “공공환경시설”을 “공공하수도”로 한다

별표 2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다목 및 비고 4.의 “차고”를 “주차공간”로 한다

별표 8 제2호 차목 1)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항2호			
1) 처리용량이 50m ³ /일 이상 500m ³ /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u>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u> , <u>하수저류시설</u>		<u>150</u>	<u>200</u>	<u>250</u>
2) 처리용량이 500m ³ /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u>하수관로</u>		<u>300</u>	<u>400</u>	<u>500</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대행업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제3조제1항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적용 시행시기(2021.1.1.) 이전에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적용 시기에 맞춰 등록요건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제3조제1항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적용 시행시기(2021.1.1.) 이전에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적용 시기에 맞춰 등록요건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8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44-201-7021